|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결정**국가세무총국 령 제37호《<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이 2014년 12월 19일 국가세무총국 2014년 제4차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국가세무총국 국장 왕군2014년 12월 27일정부 기능을 전환하고 행정 심사인허가 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일부 행정 심사인허가 프로젝트 취소 및 하부이관 등 사항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 [2013] 19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제5조를 “세금계산서 사용단위는 세무기관에 본 단위 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명칭이 인쇄된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다.”로 수정한다.이 결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실시세칙>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实施细则》的决定**国家税务总局令第37号《国家税务总局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实施细则〉的决定》已经2014年12月19日国家税务总局2014年度第4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3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局长：王军2014年12月27日　　为贯彻落实转变政府职能、深化行政审批制度改革精神，根据《国务院关于取消和下放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3〕19号），国家税务总局决定对《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实施细则》作如下修改：　　第五条修改为：“用票单位可以书面向税务机关要求使用印有本单位名称的发票，税务机关依据《办法》第十五条的规定，确认印有该单位名称发票的种类和数量。”　　本决定自2015年3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发票管理办法实施细则》根据本决定作相应的修改，重新公布。　　 |